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유해성조사 등 >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41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유해성 조사 등	2
※ 참고자료	8
1.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8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3조 [별표8])	14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5일 송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유해성 조사 등

개정안은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①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②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5조의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해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유해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기방치 건축물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16조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③ 환경부장관은 장기방치 건축물의 배출</u>

현행	개정안
	<u>허용기준을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u> <u>④ 유해성 조사의 실시 시기, 조사 방법·범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¹⁾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제33조) 또는 조업정지명령(제34조)을 하거나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제35조)하는 등 각종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 방치된 건축 자재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확인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해성 조사를

1)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하도록 하고, ② 해당 건축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기방치 건축물과 그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유해성 조사의 경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²⁾의 지역별 소재 현황, 공사중단의 직접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³⁾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⁴⁾하고 있다는 점을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2.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4.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사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보다는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실태조사 항목⁵⁾에 환경 및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⁶⁾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적

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철거할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

인 환경·인체 유해성 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둘째,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현장에 방치된 건축물 및 자재의 경우 가열·냉각시설, 정제시설 등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⁷⁾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축 현장에서 다양한 자재 및 건축 방식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방치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농도 등을 특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 또한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⁸⁾이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NO_2) 등 가스형태의 물질이나 비산먼지, 매연 등 입자형태의 물질로서, 방치된 건축물 또는 그 자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제7조의2(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7) (참고자료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참조

8)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3조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일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12. 28.>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생략)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 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라)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2)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체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다림질(텐터)시설 (2)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조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시설 (2)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5)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라비아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시설과 이 시설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7)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反應)시설 (2) 흡수(吸收)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濃縮)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燒成)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回收)시설 (6) 연소(燃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의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9) 가스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촉매재생시설 (7)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 (2) 분쇄시설 (3) 가스화시설 (4) 제진시설 (5)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포함한다) (6)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1) 반응시설 (2) 분리정제시설 (3) 분쇄시설 (4) 성형시설 (5)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6) 건조시설 (7) 저장시설 (8) 포장시설
11)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 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제 제조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4) ~ 37)	(생략)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3조 [별표8] 일부 발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12. 2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생략)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6) 그 밖의 배출시설	12 이하 30 이하 12 이하 20(12) 이하 15(12) 이하 20(13) 이하 3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4) 가스열펌프 5)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200(12) 이하 200(12) 이하 50(12) 이하 150(12) 이하 300(15) 이하 200(12) 이하 300(0) 이하 200(12) 이하 80(12) 이하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4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9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9(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4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9) 화장로시설	1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4 이하
이황화탄소(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포름알데히드(ppm)	모든 배출시설	8 이하
(표 생 략)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납화합물(Pb로서)(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4(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8(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1.5 이하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도가니로, 전 해로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 그 밖의 배출시설	0.15(12) 이하 0.3(12) 이하 0.8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 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 고형연료 사용시설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4) 그 밖의 배출시설	0.2(12) 이하 0.15(12) 이하 0.2(13) 이하 0.4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4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mg/Sm ³)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4 이하
비산먼지 (mg/Sm ³)	1) 시멘트 제조시설 2) 그 밖의 배출시설	0.3 이하 0.4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 하 또는 불투명도 40% 이하
베릴륨화합 물 (Be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2) 석탄발전시설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를 포함한다),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0.0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표 생 략)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생 략)